

제 239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 차 본회의(2019.3.18.)

---

#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



총무위원회

# 목 차

1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3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4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 비용부담 조례안 .....	18
5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6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7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8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8
9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1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55
11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	61

#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13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2.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3. 13.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가. 제안이유

군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소통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원회 기능을 정함(안 제2조)

- 군정 주요현안,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추진,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제안·심의 등

2) 위원회 구성을 정함(안 제3조)

- 30명 이내,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호선

- 위원은 군정에 관심을 가지는 군민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 3) 임기, 해촉, 위원장 직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제6조)
- 4)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간사, 의견청취를 정함(안 제7조~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안은 민선 7기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열고 거창군 발전을 위한 주요현안사업,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추진,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제안·심의 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을
- 안 제4조 ~ 제6조는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 직무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 안 제7조 ~ 제10조는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간사,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검토의견으로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절감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 가. 수정이유

군정의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추진,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제안·심의 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 중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함.

### 나. 수정 주요골자

제3조(구성) ① 항 본문 중 일부를 수정함.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수정.

##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2. 수정안 본문  
3. 수정안 조문대비표(원안:수정안)  
4. 최종안(의안+수정안)

## 붙임1 (수정안 제안서식)

###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19-22 관련
------	---------------

발의일자	2019. 3. 13.
발 의 자	심재수 의원

#### 1. 제안 이유

군정의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추진,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제안·심의 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 중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제3조(구성) ① 항 본문 중 일부를 수정함.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수정.

붙임2 (수정안 본문)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3조(구성) ①항에 위원수를 조정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수정한다.

붙임3 (수정안 조문대비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b>20명</b>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붙임4 조례안(수정안 포함)

###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중요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거창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기능)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요정책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제안·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창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3. 군민생활불편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회의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 등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13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2.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임사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3. 13.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 가. 제안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부위원장 변경(안 제2조제2항)
    - 기획예산담당관 ⇒ 직제 순서가 앞서는 국장
  - 2)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 변경(안 제2조제2항)
    - 의안제출 주무실과장 ⇒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
  - 3) 당연직 위원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
    -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  
⇒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안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조례로서

####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을 변경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자를,
- 안 제2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용어 순화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을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 순서가 앞서는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결정”을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보안업무시행요강 제4조에 의한”을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u></p> <p><u>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안제출 주무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p> <p><u>④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원은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u></p> <p><u>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u></p>	<p><u>제2조(구성) ①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u></p> <p><u>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 순서가 앞서는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③ 당연직 위원은 각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p> <p><u>④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원은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u></p> <p><u>⑤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u></p>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주요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8. 보안업무시행요강 제4조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9.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주요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8.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9.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13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임사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3. 13.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 가. 제안이유  
고문변호사 위촉제한과 해촉사유,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을 명문화하여 고문변호사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조례제명 변경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 고문변호사 위촉제한 근거 신설(안 제2조제2항)
  -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 3) 고문변호사 임기 변경(안 제4조제1항)
  - 1년 ⇒ 2년
- 4) 고문변호사 해촉 근거 신설(안 제5조)



- 고문변호사가 사임을 원하거나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5) 이해충돌행위 금지 사항 신설(안 제6조)
  - 소송 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 또는 자문을 하거나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6)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금액과 시기 변경(안 제9조)
  - 지원금액 : 5천만원 ⇒ 2천만원
  - 지원시기 : 판결 이후 지급 ⇒ 피소 이후 지급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는 거창군 또는 거창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정 심판사건, 법령 해석·적용 등에 관한 자문과 군수로부터 위임 받은 소송 등 사건의 수행을 위해 매년 고문변호사를 위촉·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전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제2항에서는 고문변호사 위촉제한 근거를 신설,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고문변호사 임기를 변경하고
- 안 제5조에서는 고문변호사 해촉 근거를 신설,
- 안 제6조에서는 이해충돌행위 금지 사항을 신설,
- 안 제9조에서는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금액과 시기를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검토의견으로는

고문변호사 위촉제한과 해촉사유,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을

신설하여 명문화하고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며, 소속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정심판 사건(이하 “소송 등 사건”이라 한다)의 자문
2. 법령 해석·적용 등에 관한 자문
3.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등 사건의 수행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같은 고문변호사를 다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 및 소송 등 사건의 수행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송 등 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 가. 불변기일 경과, 변론 불출석 등 불성실하게 소송 등을 대리하는 경우
  - 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소송 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
2.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7조(자문실적 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제8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고문 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자문 실적부(            월)

종 류	의뢰 연월일	의뢰내용	회신 연월일	회신내용	비 고
<p>종류는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그 밖의 자문사항”으로 기재함</p>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13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3. 13.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 가. 제안이유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조건 사항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용부담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유입 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 폐수 등 유입처리의 승인 등의 내용(안 제3조)
  - 배수설비의 설치 통지의 내용(안 제4조)
- 2) 배수설비의 설치·관리 등의 내용(안 제5조)
- 3) 폐수 등 배출 신고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4)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5)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6)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는 「물환경보존법」에 따라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 주요내용은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유입 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에서는 배수설비의 설치 관리 등의 내용,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폐수 등 배출 신고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정은 기업에 부담을 주어 직원채용 중단 또는 인력감축 사유가 되므로 조례제정 제고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기업체의 사용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



60%(현재 14%) 도달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 일부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 부담 조례안**

##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2. 공장건물 배치도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5. 오수 및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오수·폐수 유입 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 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통지)** 제3조에 따라 오수·폐수 유입 처리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사업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폐수관로의 맨홀에 배수설비를 연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연결할 때 그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실시 설명서, 배수설비 평면도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결된 배수설비에 부식, 접속 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폐수처

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 방법을 고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폐수 등 배출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군수는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의 사용료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부담지원)** ①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초기입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제2항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100분의 60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수·폐수의 유입 처리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의 오수·폐수 유입 처리 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아 처리 시설에 오수·폐수를 유입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유입 처리 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 사용료 산출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처리시설 사용료(BS)

$$BS = M \times \left\{ 0.5 \times \frac{BLi}{\sum_{i=1}^n BLi} + 0.5 \times \frac{F(Li)}{\sum_{i=1}^n F(Li)} \right\}$$

가. M: 월간 사용료 = 유지관리비 + 시설개선충당금

1) 유지관리비 :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연간 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 = Ei \times Fi \times R$$

· Ei: 시설 설치 비용

· Fi: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 2/1,000

· R: 물가상승률(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

나. BLi: 배출 사업자의 일평균 유입승인 오염 부하량

1)  $BLi = \text{유량(m}^3/\text{일)} \times [\text{BOD} + \text{COD} + \text{SS} + \text{T-N} + \text{T-P 농도(mg/l)}] / 1,000$

2) 해당 월의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이 유입 승인받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유입 처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F(Li):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F(Li) = a \cdot Qi \times \left( \frac{BODi + CODi}{2} + SSi + T-Ni + T-Pi \right) / 1000$$

1) Qi: 배출 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 등의 실제 배출유량

2) BODi, CODi, SSi, T-Ni, T-Pi: 개별사업장의 BOD, COD, SS, T-N, T-P 농도

3) a: 유량 누진계수

유 량 (m <sup>3</sup> /일)	a
$Q_i \leq 200$	1.0
$200 < Q_i \leq 500$	1.1
$500 < Q_i$	1.2

##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 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2) 오수 배출 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를 말한다) 사용량  $\times$  0.8(오수전환율)

다)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times$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 1)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 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나)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 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 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 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군수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 수탁자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2) 오수의 경우

### 가)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l(기숙사 200 mg/l)
- COD 100 mg/l(기숙사 200 mg/l)
- SS 100 mg/l(기숙사 200 mg/l)
- T-N 30 mg/l(기숙사 40 mg/l)
- T-P 3 mg/l(기숙사 4 mg/l)



[별표 2]

## 사용료 지원금(감면) 산출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출공식

$$CS = a \times Qi \times 539\text{원}/m^3$$

가. CS: 월간 사용료

나. a: 누진계수

(오수배출업소 a=1.0, 폐수배출업소 a=1.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업소 a=1.2)

다. Qi: 업소별 월간 배출유량

라. 539: 연간유지관리비 252,285,000원 / (30일\*12개월)=700,792원/일

$$700,792\text{원/일} \div 1,300m^3/\text{일} = 539\text{원}/m^3$$

### 2. 시설개선충당금 산출공식

가.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

$$\text{개별 사업장 시설개선충당금} = \text{월간 시설개선충당금} \times \frac{Qi \text{ m}^3/\text{일}(\text{개별사업장 배출유량})}{\sum Qi \text{ m}^3/\text{일}(\text{전체사업장 배출유량})}$$

나. 월간 시설개선충당금(E):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사용료 산출기준 [별표 1]의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출공식의 시설개선충당금 항목을 적용한다.)

다. 배출유량: 사용료 산출기준[별표 1]의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의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을 적용한다.

### 3.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

오수배출업소의 사용료 지원금은 거창군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기준에 따른 요금과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2. 시설개선충당금 산출공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오수·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포함)는 폐수배출업소기준(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출공식)을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p>○ 승인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월간 하루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하루</li> <li>2. 월간 하루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mg/ℓ, COD:       mg/ℓ, SS:       mg/ℓ, T-N:       mg/ℓ, T-P:       mg/ℓ, 그 밖의 오염물질:</li> <li>3. 월간 하루평균 오수배출량:           톤/하루</li> <li>4. 하루평균 오염 부하량:           kg</li> </ol> <p>○ 조건:</p>		
<p>「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 (인)</p>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p>「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                    (서명 또는 인)</p> <p>거 창 군 수 귀 하</p>		

#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13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2.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3. 13.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가. 제안이유

기업의 지원기준 중 하나인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고용보험료 납부서로 변경하여 거창승강기산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상시고용인원 증명 근거를 변경함(안 제2조제13호가목)

- 기업체에서 제출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서로 변경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에서 기업지원 기준중 하나인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서 「고용보험료 납부서」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제13호가목에서는 상시고용인원 증명 근거를 변경하고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 검토의견으로는

거창승강기산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나목·다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과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인원으로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과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12. (생략)</p> <p>13.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p> <p>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자</u>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자</u>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12. (현행과 같음)</p> <p>13.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p> <p>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사람</u>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사람</u>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13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2.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3. 13.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서 재단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임원 규정 삭제(안 제4조)
- 2) 이사회 규정 삭제(안 제5조)
- 3) 사무국 규정 삭제(안 제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등에서 재단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임원, 이사회,

사무국, 운영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4조 ~ 제6조에서 임원, 이사회, 사무국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상위 법령 재기재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임원)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 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p> <p>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p> <p>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lt;삭 제&gt;</p>
<p>제5조(이사회) ①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p> <p>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lt;삭 제&gt;</p>
<p>제6조(사무국) ①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p>	<p>&lt;삭 제&gt;</p>
<p>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p>	<p>&lt;삭 제&gt;</p>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13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2.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임사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3. 13.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가. 제안이유

법령 위배소지가 있는 규정과 개최실적이 없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2018. 12. 18.)으로 조례로 위임된 보조신청 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나. 제안이유

- 1)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 범위 삭제(안 제2조)
- 2)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보조사업 신청절차 보완(안 제4조)
- 3) 유명무실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6조~제10조, 제13조). 임원 규정 삭제(안 제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여야 함에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보조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2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삭제를 하고, 「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경비위원회 2년이상 운영 실적이 없어 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 범위를 삭제하고
- 안 제4조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보조사업 신청절차 보완하며
- 안 제6조 ~ 제10조, 제13조에서는 유명무실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 검토의견으로는

상위 법령 위배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조사업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 제8호)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사업 신청 등)** ① 군수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1조·제12조를 제6조·제7조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li> <li>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li> <li>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li> <li>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li> <li>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li> <li>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li> <li>6. 우수교원 및 우수 학생유치에 필요한 사업</li> <li>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li> <li>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li> </ol>	<p>제2조(보조사업 범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li> <li>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li> <li>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li> <li>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li> <li>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li> <li>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li> </ol> <p>&lt;삭 제&gt; &lt;삭 제&gt;</p> <p>6.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p>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치원장,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청 공무원 3명,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센터의 교육진흥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보조사업 신청 등) ① 군수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삭 제>

<삭 제>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삭 제>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12조 (생략)

제6조~제7조 (현행 제11조·제12조와 같음)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서식]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남/여)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 목적			
보조사업에 <u>필요한</u> 경비			
총사업비	군비보조	자체부담	<u>그 밖의 경비</u>
보조사업 기간			
사업계획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13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2.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3. 13.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은주]

가. 제안이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2009.12.30. 제정·시행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이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화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고,  
우리군 공유재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명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하기위한 목적으로  
2009. 12. 30. 조례제정을 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없어 폐지  
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 검토의견으로는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특별회계 운용실적이 전무하고 전국  
도·시·군·구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공유재산특별회  
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8개 시·군(김포시, 남  
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성시, 아산시, 전북 임실군, 전남  
화순군)으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폐지하고 있어 조례 준치  
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

2019. 3. 13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3. 13.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 가. 제안이유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센터현황

- 시설명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 ~ 2021. 12. 31.(3년)
- 대상시설 : 31개소
- 인력기준 : 3명(센터장 1, 직원 2)



○ 사 업 비 : 74,000천원 (국37,000 도11,100 군25,900)

※ 2020년부터 매년 100,000천원 규모로 운영

○ 위탁사무

-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과 식사 지도
-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과 지원,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위생관리 지침과 위생교육 자료 개발
- 급식소 급식운영 지원과 정보제공·공유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수탁기관 선정 절차

○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 선정기준

- 센터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 급식관련 사업 추진실적, 센터시설의 설치 계획 방안 등

○ 자격요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대상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등교육법」에 따FMS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

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수탁기관 선정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3) 추진일정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9. 4. ~ 5.
- 위탁관련협약 체결과 공증 : 2019. 6.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2019. 8. ~ 9.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센터내에 설치하고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 ○ 주요내용은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비 74,000천원의 규모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 검토의견으로는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을 순회 방문하여 위생·영양관리·식단등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본 동의안은 식품전문가 공모를 통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13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2.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임사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3. 13.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은주]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 조성사업

가) 목적

- 당해 부지 주변에는 거창고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최근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주택가가 확산되고 있으나

- 현재까지 주변에 공원시설이 없어 주민들로부터 어린이 공원 조성 등의 민원과 건의가 수차례 있는 곳으로
- 향후 거창읍 도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어린이 공원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공원 시설의 선제적 조성이 필요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0.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64번지 등 6 필지
- 토지면적 : 3,421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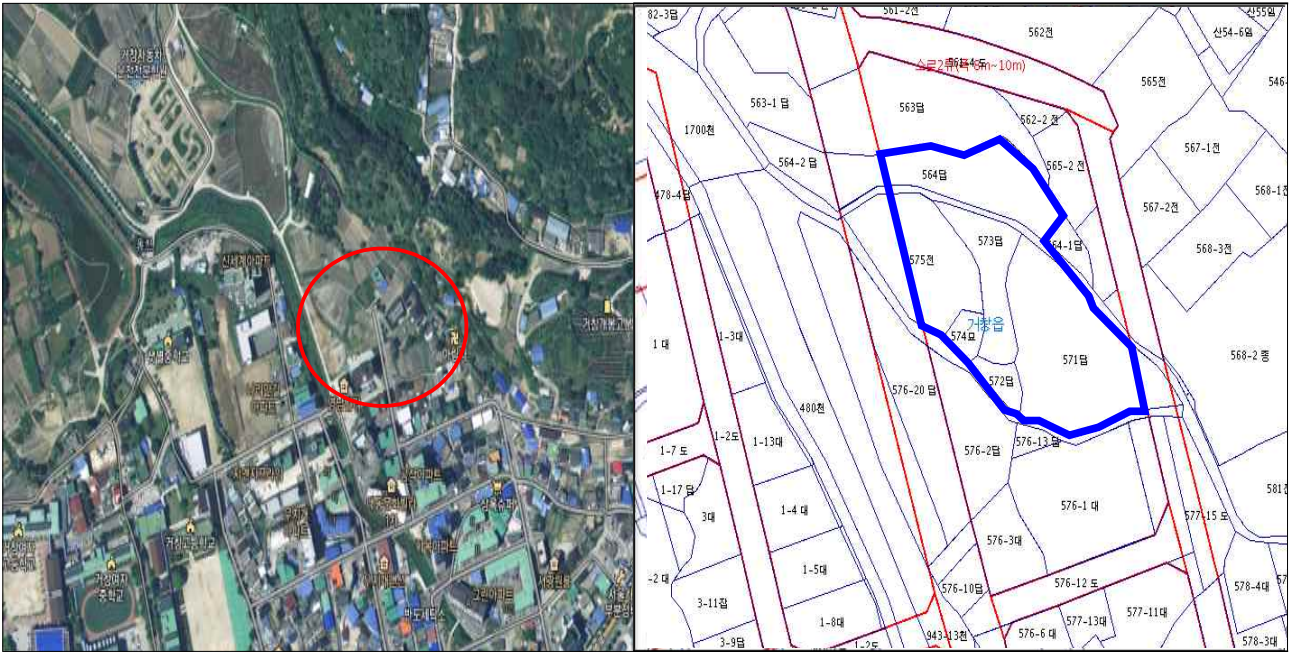
다)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 m<sup>2</sup>,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421	437,251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64	답	810	99,387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조성사업	이 * 조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71	답	1,207	165,479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조성사업	이 * 민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72	답	102	13,005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조성사업	이 * 조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73	답	390	49,725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조성사업	이 * 조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74	묘	99	12,177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조성사업	이 * 조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75	전	813	97,478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조성사업	이 * 조

※ 기준가격 : 공지시가 × 면적

## 라) 위치도 및 지적도



## 2) 거창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가) 목적

- 거창교 남단 군계획도로(중로2-17호선, 지방도1084호선)는 우리군 주간선 도로구간으로 차량통행량 대비 차로 폭 협소, 교통신호 등으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우심하여,
-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연접 토지, 지장건물의 매입)가 필요한 실정임.

### 나) 사업개요

- 위 치 : 거창읍 김천리 472-18번지 일원
- 총사업비 : 금1,250백만원(보상비 950, 공사비 300)
- 취득물건 : 토지(3필지) A=261m<sup>2</sup> 및 지장건물 2동
- 사업내용 :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D=30.0m)

다)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 m<sup>2</sup>,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47,746	
매입	토지	거창읍 김천리 472-18	대지	142.0	107,792	김*태
매입	토지	거창읍 김천리 472-19	대지	50.0	37,955	정*희
매입	토지	거창읍 김천리 398-3	대지	69.0	38,799	정*희
매입	건물	거창읍 김천리 472-18	-	234.85	39,387	김*태
매입	건물	거창읍 김천리 398-3	-	241.7	123,813	정*희

※ 기준가격 : 공지시가 × 면적

라) 위치도 및 지적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1)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 지구 온난화로 폭염, 열대야 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웰빙시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공원조성은 지속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임.
- 특히, 본 사업지구는 주변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최근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동촌 저류지 공원과 연계하면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 2) 거창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의 건은

- 거창교 남단 우리군 주간선 도로구간으로 남상면 방향 거창대학, 문화센터, 박물관 등이 위치해 차량통행량 대비 차로 폭 협소, 교통신호 등으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우심하여
-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구 일신한의원 등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 3. 13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3. 13.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 가. 제안이유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한 노인들의 목욕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 위생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사업명 : 거창군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 2) 사업량 : 목욕 차량 1대, 이용자와 차량 운행 관리
- 3) 위탁대상 사무
  - 목욕차량 위탁운영(1대)
  - 위탁차량 관리와 차량운행 업무 등 사무관리
  - 목욕차량 이용자 선정 등 관리

#### 4) 그간 운영상황

- 수탁기관 : 거창군 삶의 쉼터 장애인 복지관
- 위탁기간 : 2016. 3. 1. ~ 2019. 2. 28.
- 위탁차량

차 종	규 격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봉고3	특장탑차	99수1020	2011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동의안은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이 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위생을 관리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 ○ 주요내용은

거창군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사업은 목욕 차량 1대와 이용자와 차량 운행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위탁대상 사무로는

- 목욕차량 위탁운영(1대)
- 위탁차량 관리와 차량운행 업무 등 사무관리
- 목욕차량 이용자 선정 등 관리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

#### ○ 검토의견으로는

수혜자가 2015년 630명에서 2018년 96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은 군 직영보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어 위탁만료에 따라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